

서울요양원장 공모 주요내용(요약)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요양원장 모집 공고(요약)

1. 공모 직위와 업무

공모직위	업 무
서울요양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서울요양원 운영 총괄 (조직, 인사, 보수, 회계, 시설관리 등)노인요양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주야간보호, 방문요양·목욕·간호) 운영, 장기요양 서비스제공, 운영자(이용자) 관리 등전문요양실, 통합재가서비스 등 시범사업 참여·운영대외기관 교류협력 및 지원 등

2. 근무조건

- (임용기간) '24. 1. 1. ~ '26. 12. 31.(3년)
- (근무장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요양원(서울시 강남구 세곡동 소재)
- (보수조건) 서울요양원 보수규정에 따름('23년 기준 직무수당 포함 약 5,600만원)

3. 자격요건

- 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23. 11. 27.) 기준 기본요건 및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

■ 기본요건 ■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서 임용일부터 근무가 가능한 사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서울요양원 인사규정」제7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별첨)

■ 자 격 요 건 ■

-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아래 경력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사람**

*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 1) 사회복지분야 또는 장기요양분야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으로 5급 이상에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 2) 사회복지분야 또는 장기요양분야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3급 이상에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 3)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대학에서 **관련학과****의 부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직영 또는 위탁 장기요양기관에서 시설장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 5)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시설장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 6) 기타 1호부터 5호까지의 경력요건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선발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람

** (관련학과) 사회복지 또는 장기요양 관련 학과

4. 제출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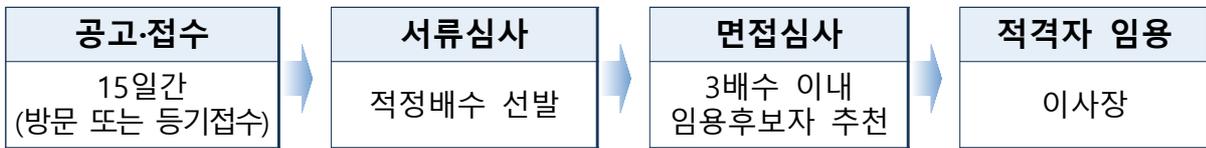
-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자격요건 체크리스트(이상 소정양식) 1부.
- 최종 학력증명서 1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서 1부.
-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사항에 대한 증빙서류 각 1부. ... 경력증명서, 의료인 면허증명서, 사회복지사 자격증명서, 논문표지 사본 등

※ 지원서 등 소정양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터넷 홈페이지(www.nhis.or.kr) 국민과 함께 → 뉴스·소식 → 채용’에서 내려 받아 작성

5.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 (접수기간) '23. 11. 13.(월) ~ 11. 27.(월) 18:00까지
- (접 수 처) (우)26464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건강로 32,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요양원장 선발심사위원회(13층, 인력지원실)
- (접수방법) 방문 또는 등기우편(겉봉에 '서울요양원장 지원서류 재중' 기재)
※ 방문접수는 토요일·공휴일 제외, 등기우편은 접수기간 내 공단 도착분에 한함

6. 선발절차



7. 기타사항

-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지원서 등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서울요양원장 후보 추천 또는 임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임명되지 않은 지원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임명여부가 결정된 날 부터 14일 이내에 제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임명여부 결정일로부터 14일 경과 후, 접수된 지원 서류는 파기 예정
- 그 밖의 사항은 우리 공단 서울요양원장 선발심사위원회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033-736-1557, 1528)

2023. 11. 13.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요양원장 선발심사위원회

(별첨)

서울요양원 「인사규정」 제7조(결격사유)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이거나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률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이나 정지된 사람
 7.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8.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9.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1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5년 동안 임용될 수 없다.
1.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 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그 퇴직일
 2. 공직자였던 사람이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